

총·설

廣域化 趨勢에 따른 首都消防行政 發展對策(Ⅱ)

李	仁	植*
李	相	基**
金	昭	秀***
崔	哲	泳****
李	圭	璇*****

第4節 都市計劃 樹立時 消防對象 ◆◆◆

- 都市計劃은 市民의 文化水準을 높이고 ◆◆◆
◆◆◆ 위하여 計劃되고 施行되어야 하나, 다음과
같이 消防對策은 未洽한 實情◆◆◆
1. 消防用水施設은 都市計劃에 반영 최대한 ◆
◆◆◆ 있으나 天災地變 또는 水道의 단·감수
시동 ◆◆◆◆◆◆◆ 있는 事後對策이 不足하
다. (例: 貯正水槽의 設置가 極히 未洽)
 2. 消防專用 加壓-開閉裝置가 全無하므로 ◆◆
◆◆◆◆◆-用水施設 活用時 水壓 低下로 인한
給水◆◆◆◆◆◆◆ 된다.
 3. 大規模의 아파트단지나 商街등이 建設◆◆◆
◆◆◆ 해소할 수 있는 消防對策이 未洽하다.
 4. 車輛 增加에 따른 駐車場 不足으로 ◆◆◆◆
◆◆◆ 道路에 駐車할 경우등에 대한 對策이 없
다.¹⁵⁾
 5. 消防用水施設의 專擔部署가 2元化 ◆◆◆◆
◆◆ 效率的인 設置, 管理, 維持體制가 未洽
하다.

第3章 消防行政의 發展方向

第1節 消防의 重要性 提高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가끔씩 이러한 말을 듣고
실감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불조심”

불은 人類의 歷史 더불어 發見되는 利用하여온
가장 必要한 文明의 利器로 등장하여 모든 分野에
서 利用되어 오고 있지만 이 문명의 이기에 의한
事故 또한 무한히 發生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로 인한 被害를 최대한으로 防止하기
위하여 消防力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부속시설물
등이 製作, 生產되어 活用되고 있는 것이다.

消防의 重要性은 前1장 第4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安保, 經濟社會, 福祉的인 側面에서 그 중요
성이 立證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도 소방
은 求心點을 찾지 못한 狀態에서 行政을 하여오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하여 온 선례를 보면 重要火災 事件
없이 지나게 되면 特別한 對策 없이 管理層나 一般人의 意識속에서 멀어져 있지만 사회의 물의가 빚
어질 정도로 火災事件이 發生하면 그때 가서야 임
시방편으로 무슨 對策을 강구한다고 하는 경우 등

* 정회원, 서울소방학교 연구반 학교장
** 정회원, 서울소방학교 연구반 교학과장
*** 정회원, 서울소방학교 연구반 소방경
**** 정회원, 서울소방학교 연구반 소방경
***** 정회원, 서울소방학교 연구반 소방위

15) 1988.5.17 동아일보 계재

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이같은 선례행정이 언제까지나 지속될련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같은 行政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覺悟와 計劃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되리라 본다. 그 對策으로는 지금까지 지나간 大型事件·事故의 先例를 다시한번 檢討하고 그 당시의 對策은 적절하였는가, 結果는 어느정도의 成果가 나타나 消防行政 發展에 寄與했는가 必히 再考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오늘의 消防은 過去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며, 現實에 滿足해서는 안되며, 未來에 도래하는 2千年代에 適應할 수 있는 힘과 技術을 쌓아가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國家發展, 市民福祉增進에 부응할 수 있는 長期의 消防對策을 마련하여 積極的으로 推進하여 나아가야 하며 消防業務의 特殊性, 專門性을 考慮한 痘제조정 및 消防業務는 消防의 專門家가 政策결정할 수 있도록 制度的裝置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 한가지는 消防의 實態를正確히 市民에게 알리는 동시에 民意를 把握 消防行政에 對한 理解와 信賴를 얻어 그 지지와 協力에 의해 消防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弘報技能의 強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第4節 消防力 基準의 再定立

1. 消防官署

날로 急增하는 消防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方面 本部나 機構擴張 等도 檢討되어야 하나 우선적인 것은 消防官署가 行政需要에 맞게 설치되고 配置數가 增加하게 되면 제반 消防行政의 現實의 需要與件이 自然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消防力 基準 第3條 1號에 의하면 市·郡의 市街地에 配置하는 消防署는

- 派出所의 數가 5個所를 超過는 境遇에는 5個所 以下마다 1個署를 더 配置하도록 하고 있고
- 第2號의 消防官 派出所에 대한 配置基準은 年間 平均風速이 4미터 未滿인 市街地에 있어서는 3km의 區域마다 1個所

- 年間 平均風速이나 미터이상인 市街地에 있어서는 2km²의 區域마다 1個所, 消防署 區域내의 密集地에는 人口 2萬人 區域마다 1個所를 配置할 수 있도록 规定하고 있다.¹⁶⁾

이같은 规定은 最大限의 人的, 物的 浪費를 抑制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現實을 감안하여 最小限의 基準을 定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基準에 맞추어 消防力を 擴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消防官署는 鎮壓要員이 24時間 待機하여 初期鎮火에 가장 有效한 體制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火災危險度 等을 綜合分析해서 算出된 市街地 人口數와 面積, 走行時間에 따라 消防官署의 數를 決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日本의 경우 市街地 人口 30萬名에 년간 평균풍속이 4m 未滿인 경우 9개, 그 以上에 11개의 消防官署를 設置하고, 동경의 경우 消防署는 行政區域에 따라 人口 15萬 面積 10km²마다 1個所를 基準으로 하고, 出張所는 市街地 走行 5分, 市街地 以外는 走行 10分 以內에 4~6대의 소방펌프차가 到着할 수 있도록 配置하고 있다.

2. 人 力

消防의 3要所中 第1要件으로 갖추어야 할 構成要件은 人員으로서 現行基準과 實際 운영상의 차이는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人員算出은 消防力 基準 第12條에 根據하여 消防펌프 車輛 1대당 5名配置 等 모든 消防車輛으로 有效 적절히 運用할 수 있는 조작원을 配置하도록 规定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消防署 設置 條例 第3條에 定員을 规定하고 있다.

그러나, '87年末 現在 保有한 消防公務員數는 2,885名으로서 (表2-2)에서 본 바와 같이 실소요기준은 4,330명인바 현재 기준에 약 67%에 지나지 않는 消防人力으로 消防力 기준에서 除外된 부분인 救急, 救助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外勤 消防公務員들은 24時間 倒日勤務를 하면서 각종의 非番活動을 하고 반대부 직원의 教育, 연가, 病暇 등 事故發生時는 待機勤務를 해야 되기 때문에 1日 平均 勤務時間은 約 12~15時間

16) 消防力 기준에 관한 規則, 內務部 消防訓練 例規集 594

勤務하는 셈이 되며, 1人當 擔當하는 市民은 약 3천5백명이 된다.¹⁷⁾

따라서, 消防公務員의 業務量은 점점 過重되고 職務意慾은 減退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어 편승하여 消防力 基準을 다시한번 재고하여 現實與件에 적응한 基準을 마련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人員算定에 있어서는 消防官署 數와 車輛에만 根據를 두고 산정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外勤 消防官의 勤務時間은 고려하여 1日 3교대 勤務方法과 職員의 教育, 休暇病暇 등을 고려한 여유율을 가산해 算定하는 方法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3. 裝備

消防裝備는 火災의 特性, 都市의 形態, 建築物의 規模, 危險物 火災 等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각種의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 시내에 保有하고 있는 裝備現況은(表2-3)와 같이 基準과 保有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84年度에 策定한 所要量은 總 539台가 所要되나, '87年末現在 보유대수는 363대로서 그 부족수를 알 수 있다. 특히 建築技術의 發達과 함께 高層化, 深層化 되어가는 建築物에 비해 高架車輛 等은 상당히 不足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消防裝備도 消防官署 數에 따라 配置基準을 정해서 運用하여야 한다. 특히, 서울에 있는 消防官署를 보게되면 하나의 관서가 보통 수개의 관서와 인접 또는 擔當區域에 둘러싸여 있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1대씩의 펌프차가 配置되어 있는 실정인바, 前 3장 제1절에서 提示된 바와 같이 消防官署 配置方法과 동일하게 市街地 人口數와 走行時間에 따라 配置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車輛運用上의 問題點도 예상하여豫備車輛을 確保運營하여야 할 것이다.

즉, 消防車輛의 故障, 修理, 整備등을 위해 장시간을 요하는 空白事態가 發生할 것은 對備하여 地域與件에 맞게 일정한 比率로 대체차량을 確保하여 運營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日本의 경우, 소방펌프차 8대마다 1台의 比率로 예비차를 배치하고 있음)

또한, 서울소방의 消防裝備 補強計劃을 보면 每

年 일정량의 물탱크차를 증차 또는 대폐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탱크차의 대당 構入費는 4,300萬 원에 달하고, 年間 管理維持費는 1,700萬 원(人件費 1,200萬 원, 油類 및 보수 450만 원, 保險 50만 원)에 이른다.¹⁸⁾

이같은 計劃은 現實的으로는 불가피한 狀況이라 할 수 있으나, 未來志向의 側面으로 볼 때는 극히 낙후한 行政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管理維持費를 消防用水設置費에 投入하면 멀지않은 장래에 물탱크차에 의존하지 않는 火災鎮壓체제를 갖춘다는 計劃下에 지금까지 消火栓을 增設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多覺의 消防用水 設置計劃은 불비하므로 消火栓에만 의존하는 大量設置는 第2장 제4절에서 본바와 같이 紙水中斷 等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對策이 극히 未洽한 實情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消防法에서 算定하고 있는 消防用水을 다음과 같이 消火栓과 賽水槽로 區分하여 그 設置하는 方法도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고 본다.

*물탱크차에 의존치 않는 가장 이상적인 소방용수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가. 消火栓

(1) 設置基準: 消防法 第41條 및 규칙 제38조 제1,2,3항 및 별표8

- 商工業地域: 100미터 이내
- 其他 地域: 120미터 이내

(2) 消火栓 相互間의 거리: 最小 140m, 最大 200m

17) 정충일 서울특별시 消防行政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서울 소방본부 1985)

18) 1985. 단국대학교 계산통계학 교수 이강석 소화전 대량 설치시 물탱크차에 따른 예상절감 계산서

- (3) 消火栓 1개 防護하는 面積 ; 20,000m²
- (4) 所要基準(서울시 전역을 상공업지역으로 보고 산정한 것임)
 - 설치가용면적 : $262,697\text{km}^2 \div 20,000\text{m}^2 = 13,135\text{개}$

(5) 所要判斷

• 問題點

형행법상으로 산출한 所要基準數는 설치상의 最小單位를 정하고 있으므로 소요기준대로 用水施設을 100% 설치한다해도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야기되기 때문에 물탱크차 없는 鎮壓作戰은 다소 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단위별 都市計劃과 配管網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消火栓 상호간의 거리가 달라지며, 設置位置 지역여건에 따라 死角이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된다.

- 특수장소 등 大形火災 脆弱地域 및 重要火災 建物 等에는 多重의 消火栓이 必要해지므로 最大 所要基準 個數 確保가 불가피하다.

- 高地帶와 消防車輛 不通地域이 散在해 있기 때문에 現在의 所要基準數로는 급수 작전이 지연되어 鎮壓에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 對策

現行法上 設置基準을 最小單位로 하여 서울지역 與件에 맞는合理的인 消防用水의 설치에 관한細部事項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推進하면 紙水作戰이 圓滑히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6) 實所要 適正 基準數 算定內容(동경 소방청 수리규정 參考)¹⁹⁾ 現行法上 設置基準은 理論上 最小單位로 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소방 與件上 不合理的 점이 많기 때문에 보다合理的인 紙水作戰을 展開하기 위하여는 實際 與件에 맞게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이고 圓滑한 鎮壓體制를 갖추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기준하에 推進해야 된다고 본다.

(가) 算定方法

서울시 全體面積中 設置可用面積을 브럭화된 것으로 보고 그 브럭을 일정한 區劃 즉, 메쉬(mesh)로 나누어 1메쉬당 9.5개의 용수시설을 死角防止를 고려하여 설치하면 東京消防과 같은 水準의 消火栓 確保가 된다.

• 서울시의 設置可用面積 $262,297\text{km}^2 \div 62,500$

$$(1\text{메쉬}) = 4,203\text{메쉬}$$

$$\text{合計} : 4,203\text{메쉬} \times 9.5\text{개} = 39,929\text{개} \text{ 소요}$$

(나) 設置方法

- 소방법상 配置基準을 原則으로 하고 追加로 中路以上의 道路에는 道路의 양쪽에 100-200미터 간격으로 지그자그형이 되게 설치
- 消防活動上 障害發生地域 - 步行距離 100-140m가 되도록 설치
- 死角地帶 - 수도배관을 고려하여 지역설정에 맞게 설치
- 高地帶 等 기타 - 地域의 特性 대상물의 중요도에 따라 증감설치

나. 貯水槽

(1) 設置根據

소방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각호

(2) 特別히 정한 規則이나 規定은 없으며, 내부 지침으로 消火栓 87%, 貯水槽 10%, 紙水塔 3%로 정하여 運營하고 있음.

(3) 貯水槽의 必要性

저수조의 주된 용도는 消火用水로 活用하기 위하여 設置하나 必要에 따라 工業用水 等으로 使用되어야 하기 때문에 消火栓에만 편중하고 저수조의 설치를 고려치 않을 경우 天災地變에 의한 단·감수시와 우발사고, 보수공사 등으로 아니한 단·감수시는 鎮壓作戰은勿論 市民生活에 많은混亂이 야기된다.

(4) 所要判斷(東京 消防廳 資料參考)²⁰⁾

• 現 保有數에 의한 判斷

현재 보유하고 있는 貯水槽는 342개로서 전체 可容 面積으로 볼 때 1개당 $768,119\text{m}^2$ (232,763)평의 面積을 방호하고 있으면서도 물탱크차에 依存하는 鎮壓體制때문에 貯水槽 본래의 利用價值는 적다고 볼 수 있으나 물탱크차

19) 동경소방청 수리규정 훈령 제19호

20) 동방소방청 수리규정 훈령 제19호

없는 鎮壓體制가 갖추어지고 紙水에 突發事態等이 發生할 경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消火栓 大量設置와 함께 適正基準數를 정하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 内務部 指針에 의한 判斷

内務部 指針에는 消火栓의 總 所要個數當 20%씩 저수조로 설치토록 規定을 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총소요개수 8,264개의 20%인 1,653개를 설치 完了한다해도 1개가 방호하는 面積은 158,905m²가 되므로 非常事態 發生時에는 對處할 수 있는 能力이 未洽하게 된다.

• 消火栓 大量設置와 關聯한 所要判斷

消火栓 大量設置와 병행하여야 할 저수조의 大量設置는 必然의이라 아니할 수 없다. 貯水槽의 용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事由時に 多樣하게 이용되어 그 重要度는 他用水施設에 비할바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地域與件에 맞는 최소한의 所要基準數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積極 推進해야 할 것이다.

非常事態 發生時 消火栓에 의한 紙水가 중단되고 貯水槽에 의한 紙水作戰이 展開될 경우 현행대로의 저수조의 인근인 경우는 별문제가 없으나 원거리일 경우는 급수작전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消火栓 算定方法과 같이 全體 可容面積을 메쉬(Mesh)로 나누어 1메쉬당 100m³이상의(40m³인 경우는 2개이상) 貯水施設을 地域與件에 맞게 設置하고 高地帶 등 特殊地域에는 別途의 貯水施設을 追加로 設置한다.

*1메쉬는 250m × 250m(62,500m²)로 한다.

• 設置가용면적 $262.697\text{km}^2 \div 62,500\text{m}^2 = 4,203$ 메쉬

실 소요기준수 : 4,203개

위에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에서 펌프차에 의한 원활한 火災鎮壓을 위해서는 消火栓 39,929개, 貯水槽 4,203개로 總 44,132개가 必要하게 되므로 長期的인 計劃하에 앞으로 설치될 上水道公社側과

緊密하게 協調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第3節 消防共同施設稅의 適正活用

'86年度 各 市道別 消防共同施設稅의 使用實績는 第1章 6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平均 26.4%로 极히 저조한 實績이다. 目的稅인 消防共同施設稅는 消防官署 增設, 消防裝備의 確保, 消防用水施設等에 投資되어야 하나 지금껏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관심있는 것은 대도시인 서울은 26.4%° 비해 仁川直轄市가 66.1%, 大邱直轄市가 66.1% 釜山直轄市가 62.8%를 投資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豫算編成은 消防行政 發展을 그만큼 促下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예산산정은 消防의 最小單位 官署인 을선 派出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患者保護用 거즈와 같은 소모품이나 공기호흡기 착용시 사용하는 확성기등에 소요되는 빗데리 등의 소모품은 사용상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실저 火災現場에서는 그 사용예를 거의 볼 수 없으며 하나의 展示物로 적재 保管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火災現場에서 鎮火作業中 裝備의 破損이 發生할 경우 自體整備 또는 辨償措置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事項은 消防公務員의 士氣低下는勿論, 消化發展을 저해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현상들을 종합해볼 때 消防의 發展은 消防豫算의 投資費에 따라 그 發展速度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消防行政 發展에 기여되는 모든 計劃은 ◆◆◆

◆ 事業이고 막대한 예산이 投入되어야 發展을 가져올 ◆◆◆◆◆ 만큼 과감한 行政改革下에 有效 적절한 投資를 ◆◆◆◆◆ 發展을 早期에 完成시켜야 되리라 본다.

第4節 消防用水施設의 專擔部署 設置運用

서울특별시 消防本部 機構 및 定員表를 ◆◆◆
◆◆◆ 擔當要員은 消防長 1名으로 되어 있고 消防署의 ◆◆◆◆◆ 消防校 1名으로 정하여 消防用水에 관한 모든 ◆◆◆◆◆ 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行政은 世界 어느 國家에서도 찾아볼 수 ◆◆◆◆◆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運營하고 있는 서울소방의 ◆◆◆◆◆ 體系는 一元化된 行政으로서 設置는 消防署長으 要請 ◆◆◆◆◆

◆하고 管理維持는 소방에서 하며 故障등 사고 發生 ◆◆◆◆◆ 協調依賴하여 보수하는 행정이 持續되고 있는 실정이다. ◆◆◆◆◆ 用水의 設置, 管理維持에 關한 전담부서의 부재로 消防◆◆◆◆◆ 研究調查등이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設置方法과 ◆◆◆◆◆ 어서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狀態에서 다종 다양하게 ◆◆◆◆◆ 있는 것이다. 따라서, 消防用水의 新設時는 擔當公務員이 ◆◆◆◆◆ 確認하고 施設事項을 指導하여야 하나 擔當要員自身이 ◆◆◆◆◆ 確認하고 施設事項을 指導하여야 하나 擔當要員自身이 ◆◆◆◆◆ 모르고 있는 것이 大部分이고, 他業務의 우선 途行등으로 現場確認은 形式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 설치된 消火栓은 外觀上 조합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行政 不在는 管理維持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기 설치된 地下式 消火栓 및 貯水槽는 대부분이 도로 또는 보도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설치된 소방용수는 사용상에는 問題點이 없다손치더라도 서울시의 잣은 道路補修工事와 緊急 鋪裝工事が 행하여질 경우 消火栓 자체를 포장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보도 블럭공사시에도 물지각한 인부들에 의해 消火栓과 制水弁이 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상당하게 發生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소방용수에 관한 행정부재는 심각한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물탱크차를 없애고 大量의 消防用水에 의한 鎮壓體制가 이루어질 때를 생각해 볼 때 消防用水施設의 專擔 部署設置運營은 가장 基本的이면서도 조속히 실현되어야만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用水 專擔部署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運營하면 消防用水 運營體制는 서울消防與件에 맞게 최대한도의 效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 消防本部 防護課내에 用水係를設置하여 用水의 開發 및 調整 計劃 擔當 1~2名과 用水施設의 維持管理 等 消防用水 施設과 關係되는 業務를 途行하는 專擔要員 2~4명과 用水施設의 設計 및豫算, 技術指導, 施工監理에 관한 專門要員 3~5名을 두고 業務를 途行하면 가장 이상적인 行政體制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第4章 結論

우리가 살고 있는 이 時代는 高度化된 國民서비스를 要하는 時代이다. 이 重要한 時期에 消防의百年大計를 위한 劃期的인 發展計劃이 서지 않는다면 國家發展에 큰 障害要因이 될 것임은勿論 市民生活 安定에도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서울消防은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各鍾制度의 變遷과정을 통하여 많은 發展을 거듭하였다라고 볼 수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火災鎮壓體系는 未洽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특히 消防用水施設의 設置 管理維持는 先進國에 비해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재래식에의한 鎮壓行政이 계속되므로 상당한 問題點이豫想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 절실히 要求되는 消防行政의 專門化 方向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多方面에 걸쳐서 改善方案이 要求되고 있다. 이같이 要求되는 改善案은 他公務員이 해야하는 과제가 아니라 우리 消防人이 解決해야 될宿命의인 課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對應할 수 있는 革新的인 對策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여 지속적으로 推進하면 消防이 추구하는 消防行政 發展은 早期에 成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 國民서비스에 積極好應할 수 있는 中·長期 消防行政 發展對策을 樹立하여 推進해야 한다.
2. 消防用水施設의 大量設置와 關聯한 緊急對策이 단계적으로 講究되어야 한다.
3. 消防用水施設의 設置運用에 관한 專擔部署를 設置運營해야 한다.
4. 都市計劃樹立時 消防道路, 上水道 配管網等消防對策을 積極 반영할 수 있는 方案이 講究되어져야 한다.
(計劃樹立時 消防關係 擔當公務員이 參與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措置가 있어야 한다)
5. 管理層과 一般市民들로부터 疏外視되고 있는 消防에 대한 관心得를 높이기 위하여는 多方面으로 弘報對策을 마련하여 推進하여야 한다.

李仁植·李相基·金昭秀·崔哲泳·李圭璇

6. 外國 消防力에 비해 越等히 不足한 消防力 增強이 不可避하므로 조속한 對策하므로 조속한 對策이 마련되어 消防公務員 福祉增進에 寄與해야 한다.
7. 消防道路의 擴充方案이 다시한번 고려되어야 한다.
(現行 4미터에서 5~6미터로)
8. 各 地域別로 散在되어 있는 적절한 高地帶 消防對策이 補完 樹立되어야 한다.
9. 國民 信賴度를 높일 수 있는 對市民奉仕영역 을 擴大하여 運營하여야 한다.
“消防은 우비와 같다”라는 理論을 펼친 대선배님의말이 있다. 우비는 비가 올 때는 없어서는 아니될 必須品이듯이 火災에 있어서의 消防은 우비와 같은 必須要件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비는 비를 막아주는 한개의 物體 즉道具일 뿐이고 消防은 火災를 豫防, 警戒, 鎮壓하여 國民生活安定이라는 무한한 生產性을 發生하고 있기 때문에 우비와는 次元이 다르다고 본다. 그러나 우비와 消防은 하나의 物件과 거대한 組織關係로 分類되지만 그 價值面으로 보면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다. 우비는 비가 올 때만 使用한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데나 팽개쳐져서 녹이 슬고 망가져서 물건으로서의 수명이 다해지듯이 消防도 第3章에서 본바와 같이 大型火災 事件이 없이 오랜期間이 지속되면 國民意識속에서 그 存在價值가 멀어지고 消防公務員 또한 나태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의 가치처럼 비가 오는 것을 對備하여 事前에 손질을 잘해두면 수명연장이 되어 要緊하게 쓰여지듯이 消防도 有事時에 對備하여 變함없이 發展行政을 持續해야 될 것이다.

参考文獻

*國內圖書

1. 内務部: '86 火災統計年報(서울 삼진企業印刷株式會社 1987)

2. 内務部: 消防訓令 例規集
3. 内務部 消防學校: 第3回 消防行政 戒鑽大會 優秀研究論文集(1986).
4. 東亞日報: 地方 輿論板('88.5.17, 6.13, 8.5)
5. 서울特別市: 서울시 統計年度(동강품 印刷株式會社 1987)
6. 이강성: 消火栓 大量設置時 물탱크차 減縮에 따른 豫算節減計算書(1986)
7. 정충일: 서울特別市 消防行政 發展方向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行政大學院 1985)
8. 최금성: 한국 消防總監(서울 安全出版社, 1971)

*外國圖書

1. '86 消防핸드북: 東京消防廳편(1986, 1987)
2. 火災편람: 日本 화재학회편(공립출판 株式會社 1984)
3. 消防力, 소방수리의 基準解說: 전국가제 법령출판 주식회사(1986)
4. 소방요람: 전국가제 법령출판주식회(1988)
5. 近代消防: 전국가제 법령출판주식회사(1987, 1988)
6. 建築基準法 關係法令集: 동경도 建築行政協會(1984)
7. 東京消防廳 消防소리 규정: 동경消防廳 훈령 제19호(1985)
8. 수도시설 설계
9. 消防法 解說: 동경소방청 예방구급과편(1984)